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⁴

G11B 7/00

G11B 7/09

(11) 공개번호 특 1985-0003027

(43) 공개일자 1985년05월28일

(21) 출원번호

특 1984-0006399

(22) 출원일자

1984년 10월 16일

(30) 우선권주장

8303560 1983년 10월 17일 네델란드(NL)

(71) 출원인

엔. 브이. 필립스 글로아이랑펜파브리켄 아이. 엠. 레르너

네델란드왕국 아인드호펜 그로네보드세베그 1

(72) 발명자

마르티누스 페트루스 마리아 비에르호프

네델란드왕국 아인드호펜 그로네보드 세베그 1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청구 : 없음(54)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기록 반송자 정보의 재생용 장치**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도1****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기록 반송자 정보의 재생용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광학상 판독 가능한 기록 반송자를 판독하기 위한 장치, 제2도는 제1도에서 보여준 장치내 사용을 위한 트래킹-에러 검출기.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장치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신호파형.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 장치내 사용을 위한 트래킹-에러 신호 발생기의 제2실시예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청구항 1**

중간 영역과 교체하는 광학상 검출 가능한 영역의 한 트랙의 형태안에 정보가 저장되는 광학적으로 판독 가능한 기록반송자로부터 정보를 재생시키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장치가 기록 반송자를 경유 광학검출기상의 광비임을 투영시키기 위한 광학 시스템을 구비하고, 상기 검출기가 원점이 광학 시스템의 광축상에 배치되며 X축이 트랙방향에 효과적으로 연장되고 X축이 트랙방향의 역으로 연장되는 가상의 X-Y-좌표계의 분리 상한안에 배정된 4개의 부-검출기를 구비하며 또한 제1신호(S₁)를 형성시키기 이해 대각선으로 배치된 제1 및 제3부 -검출기에 의해 공급된 신호를 더하기 위한 제1가산기회로와, 제2신호(S₀)를 형성시키기 위해 적어도 다른 두 개의 부-검출기에 의해 공급된 신호를 더하기 위한 제2가산기회로 그리고 제1 및 제2신호로부터 트래킹-에러 신호를 구동시키기 위한 트래킹-에러신호발생기를 구비하는바, 트래킹-에러신호 발생기가 제1신호와 제2신호의 똑같은 영교차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그리고 상기 시간 간격에 의존하며 트래킹-에러신호를 형성시키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장치는 실제 고정된 비트 주파수의 정보가 기록되는 기록 반송자를 판독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바, 각각 제1 및 제2신호의 영교차점에서 각각 제1 및 제2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제1 및 제2영교차점 검출기와, 비트주파수 혹은 고조파에 동조되며 제1 및 제2영교차점 검출기에 의해 각각 여기되는 제1 및 제2동조회로에 의해 공급된 신호들 사이의 위상차를 검출하기 위한 제1위상검출기에 의해 특징을 이루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2가산기 회로가 4개 부-검출기 모두에 의해 공급된 신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며 제3 신호를 형성시키기 위한 제2 및 제4부 검출기에 의해 공급된 신호를 더하기 위한 제3가산기 회로를 구비하는바, 제3신호의 영교차점에 제3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제3영 교차점 검출기와, 제2동조회로와 비트 주파수 혹은 고조파에 동조되며 제3의 영교차점 검출기에 의해 여기되는 제3동조회로에 의해 공급된 신호들 사이의 위상차를 검출하기 위한 제2위상검출기 그리고 제1및제2이상검출기에 의해 공급된 신호를 더하기 위한 합산장치에 의해 특징을 이루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신호의 동일한 영-교차점사이의 간격에 일치하는 지속성의 펄스형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펄스형 신호에 대한 펄스의 지속성을 결정짓기 위한 시간 측정수단과 제1 및 제2신호의 동일한 영-교차점이 발생시키는 순차를 검출시키기 위한 그리고 반응에 따라 시간측정수단에 대한 복수의 출력신호를 반전시키거나 반전시키지 못하는 직접 검출수단 등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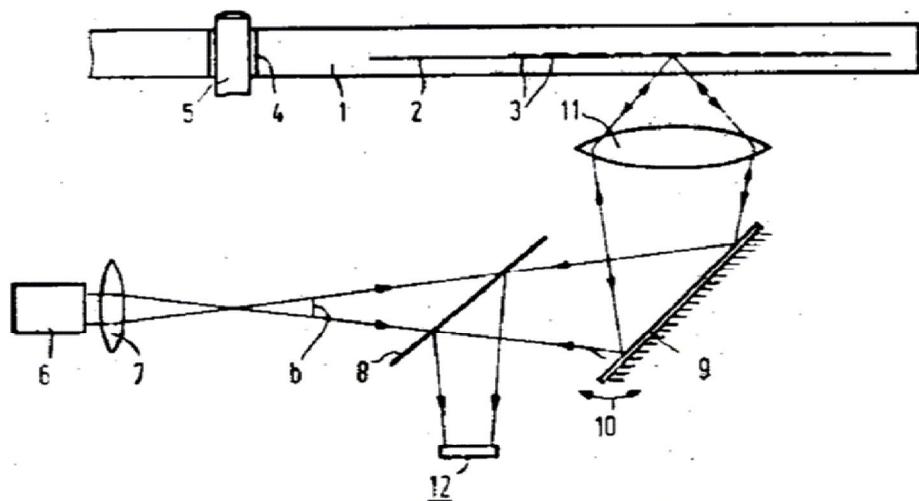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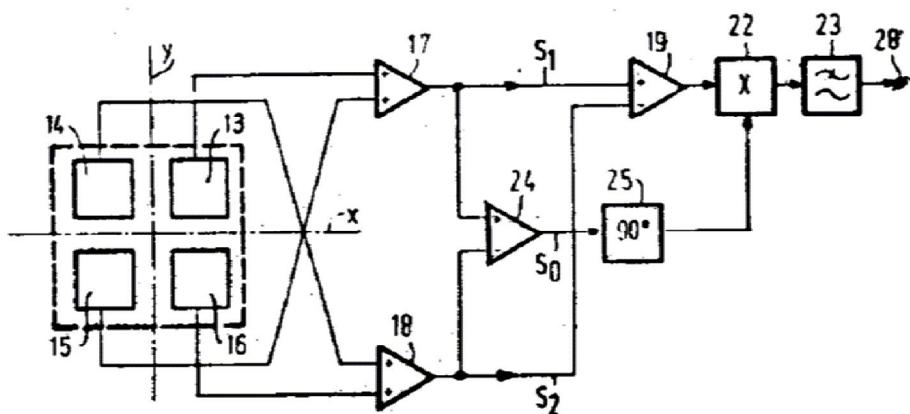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펄스형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수단이 제1 및 제2신호를 실제 장방형 신호를 변환시키기 위한 제1 및 제2리미터 수단과 상기 리미터 신호가 인가되는 배타적 OR 기능이 있는 게이트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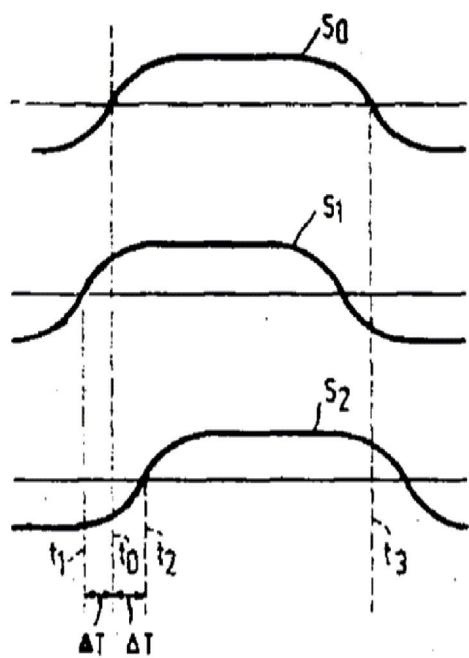
청구항 6

제4항에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직접 검출수단이 제2신호의 영교차점의 순간에서 복수의 제1신호를 결정짓는 검출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요엔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도면1****도면2**

도면3



도면6

